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56
----------	------

발의연월일 : 2023. 2. 27.

발의의원 : 신달호 의원,  
박주용 의원, 최재규 의원

## 1. 제안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군수와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5조)
- 라.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마.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바.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사. 지도·감독 등과 기부 협조요청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10조)
- 아.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교육·홍보,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안 제11~12조)

##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그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에 의해 신체 및 생명 등의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등을 준수하여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4.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6. 기부식품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
4.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또는 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2019.4.23. 일부 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